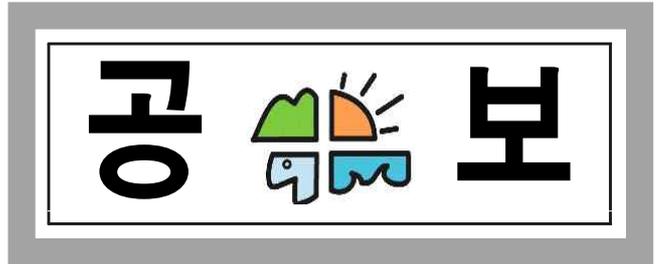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027호 2016년 11월 7일(월)

## 공 고

-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속초시 공고 제2016 - 751호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 속 초 시 장

###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간의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제처 협업과제 및 규제개선 과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조례에서 반복 규정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및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조항 삭제 (안 제7조 및 제10조)  
⇒ 법 제26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4항 관련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명확화 (안 제12조)
  - 채권상환기간 : 10년, 이율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산정  
⇒ 법 제47조 3항 관련
- 조례 제정이 불필요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조항삭제(안 제27조) ⇒ 법 제113조 2항 및 제59조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반영 및 보완

###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제48조)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공장이라도 대기·수질·소음 등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설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 가능

⇒ 법 제76조 5항 제1호의2 및 시행령 제79조 1항 및 3항 관련

### ○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4항제3호)

- 건폐율 완화 20% ⇒ 60%

⇒ 시행령 제84조 제8항 관련

###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학교시설 증축 등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6항)

- 건폐율 완화 20% ⇒ 30%

⇒ 시행령 제84조 6항 제7호 관련

### ○ 임대주택의무기간 완화 및 학교부지 외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안 제53조제2항)

- 임대주택의무기간 완화(10년 이상 ⇒ 8년이상)
-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건설 허용

⇒ 시행령 제85조 3항 관련

###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 야영장 시설 입지 건축제한 사항 신설

(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2, 별표 14부터 18까지, 별표 20, 별표 22)

## 다.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

- 폐지규정등 보완 (안 제71조 제4항 및 제73조 제1항·제2항)
  -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전임계약직 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

##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장(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17-701),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 연락처 : 전화(033-639-2447), 팩스(033-639-2485), 이메일(gustjr01@korea.kr)

##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를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

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71조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하며,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속초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2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lt;삭제 2016.7.8.&gt;</p> <p>2. &lt;삭제 2016.7.8.&gt;</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속초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 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 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의 경우

10. 영 제4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30도 이상인 주거·상업·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삭 제>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4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전에는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2.(생략)

<신 설>

제48조(-----에서의 ----) ①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1.~2.(현행과 같음)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

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  
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  
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  
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  
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  
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  
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  
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  
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내에 기반시설  
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3조(건폐율 완화) ①~③ (생략)

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농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2. (생략)

<신 설>

⑤ (생략)

<신 설>

제53조(건폐율 완화)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농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농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

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①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 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 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 ④ (생 략)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생략)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속초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지방공무원임용령」  
-----  
--- 일반임기제공무원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지방공무원임용령」-----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②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

※ 별표의 개정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지 않음.